

외환거래약정서

년 월 일

홍콩상하이은행 [_____]지점 ①

거 래 처 : _____ ①

주 소 : _____ ①

인 감	
대 조	

제 13 조	
확 인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수령하였으며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음.	①
---	---

위 거래처(이하 “거래처”라 함)와 위 은행(이하 “은행”이라 함)은 제1조 각호에 정한 거래를 함에 있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확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르기로 한다.

제 1 조 적용범위

이 약정서는 다음 각호의 현재 및 장래의 모든 거래에 적용하기로 한다.

1. 내국통화와 외국통화간의 매매
2. 외국통화간의 매매
3. 통화옵션거래
4. 기타 각 전호에 준하는 거래

제 2 조 관련 규정의 준수

- ① 거래처는 이 약정서에 의한 모든 개별 외환거래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규정과 기타 모든 관련 법규를 완전하게 준수할 것임을 보장한다.
- ② 거래처는 개별 외환계약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은행이 상당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개별 외환계약을 체결할 때나 그 이전에 외환계약의 실수(實需)를 입증하기 위한 실수거래 증빙서류 혹은 은행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기로 한다.

제 3 조 외환계약의 체결 및 성립

- ① 이 약정에 의한 개별 외환계약은 서면 합의서의 유무에 불구하고 거래처가 구두, 전화, 팩시밀리 또는 텔렉스로 외환거래를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승낙한 때에 성립한다.
- ② 이 약정에 의한 개별 외환계약을 체결하고 결제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거래처의 거래담당자("거래담당자"라 하며, 이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의 성명, 부서, 직책 및 이들이 사용할 인감, 서명, 전화번호("수권전화번호"라 함)(이들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는 별지 기재와 같다.
- ③ 거래처는 제2항의 각 항목이 변경, 추가 또는 삭제되는 즉시 이를 은행에 통지하기로 한다.

제 4 조 시간외 거래 또는 장외 거래

이 약정에 의한 외환계약은 거래처 및 은행의 영업시간에 제한받지 아니하고 또는 거래처 및 은행의 사무실 내·외 어디에서든 제3조 제2항에 의한 거래담당자를 통하여 체결할 수 있다. 영업시간 외에 또는 각 당사자들의 사무실 아닌 다른 장소에서 체결된 외환계약은 마치 그러한 계약이 영업시간중에 각 당사자들의 사무실에서 체결된 것과 같이 거래처 및 은행에 대하여 유효하고 구속력을 가진다.

제 5 조 거래내용의 확인 등

- ① 이 약정에 따라 성립한 모든 외환거래는 거래일 다음()영업일까지 은행과 거래처간에 우편, 텔렉스, 팩시밀리, 또는 기타 전신수단을 이용하여 교환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은행은 즉시 이 외환거래의 내용의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외환거래 확인서를 작성하여 거래처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 ② 제1항의 확인서는 외환계약에 대한 증거에 불과하며, 은행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외환계약의 성립, 유효성 또는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거래처가 은행의 확인서를 받은 때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거래처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확인서의 기재는 명백한 착오가 없는 한 정확한 것으로

로 본다.

- ③ 거래처는 은행이 이 약정에 따른 외환거래의 체결, 거래처의 지시 및 확인 등과 관련된 전화대화(거래처 및 은행의 임직원, 대리인, 그리고 관계사 또는 지점 등을 포함함) 내용을 녹음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또한, 거래처는 법에서 허용되는 한, 녹음된 자료가 본 계약서 또는 외환거래와 관련된 소송에서 증거로서 법원에 제출될 수 있음에 동의한다.

제 6 조 약정간의 관계

- ① 이 약정서, 이 약정서에 의해 규율되는 모든 외환거래 및 그와 관련하여 당사자들간에 합의된 외환거래의 모든 조건 (그리고 동 조건이 외환거래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한, 각 확인서), 이 약정서에 대한 부록(있는 경우) 및 그에 대한 모든 변경은 전체로서 당사자들간의 단일한 약정을 구성한다. 당사자들은, 이 약정서에 의해 규율되는 모든 외환거래는, 그러한 개별 거래들이 전체로서 당사자들간의 단일한 약정을 구성한다는 인식에 근거하여 체결되었음을 확인한다.
- ② 이 약정에 의한 외환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처가 외국앞환어음의 매입, 외화표시대출 등 외환거래를 의뢰한 경우에 있어서는 외환거래의 성립에 의하여 은행이 당연히 이들의 의뢰에 응낙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

제 7 조 계약보증금의 예치

- ①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은행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처는 계약보증금을 예치한다.
- ② 환율의 변동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래처는 은행의 청구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추가 예치한다.

제 8 조 인도일 산정

- ① 계약기간을 일단위로 약정하여 외국통화간의 개별, 선물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일에 이은 세 번째 영업일 (한국 및 해당 통화국에서의 은행 영업일을 말함, 이하 같음)로부터 기산하고, 내국통화와 외국통화간의 개별 선물환계약인 경우에도 계약일에 이은 세 번째 영업일로부터 기산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인도일로 한다. 다만, 외국통화간의 선물환거래의 경우 해당통화별 국제금융시장의 거래관행이 위와 다른 때에는 그 국제금융시장의 거래관행에 따른다.
- ② 계약기간을 월단위로 약정하여 외국통화간의 개별 선물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일에 이은 세 번째 영업일로부터 기산하고, 내국통화와 외국통화간의 개별 선물환계약인 경우에도 계약일에 이은 세 번째 영업일로부터 기산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월의 기산일과 같은 날을 인도일로 한다. 다만, 그 경우 제1항 단서를 준용하기로 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달에 기산일과 같은 날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월의 말일을 인도일로 한다.
- ③ 인도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인도일로 한다. 다만, 제2항의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이 다음 달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인도일로 한다.
- ④ 거래처의 선택으로 인도일을 확정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개별 선물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거래처는 인도일로 확정하고자 하는 날의 2영업일 전까지 은행에 이를 통지한다.

제 9 조 은행에 의한 인도일의 연기 또는 계약의 종료 등

- ①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의 변경 또는 기타 은행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이 약정서 또는 개별 외환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은행은 거래처와의 협의회 후 그러한 사유가 종료할 때까지 인도일을 연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은행은 당해 개별 외환계약을 해지하거나,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반대거래로써 개별 외환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정할 수 있다.

제 10 조 거래처에 의한 인도일의 변경 또는 해제 등

거래처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개별 외환계약을 해제하거나 또는 그 인도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1 조 은행에 의한 해제

- ① 거래처에 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 및 제2항(당연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또는 제7조 제3항 및 제4항(은행의 청구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각호의 사유의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은 거래처에게 통지함으로써 모든 개별 외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거래처에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 제2호(파산, 화의개시신청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모든 개별외환계약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은행의 통지 없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개별 외환계약이 해제될 경우 거래처는 그로 인하여 은행이 입은 손해를 은행이 계산근거를 명시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은행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언급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 은행은 그 즉시 또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 안에 (1) 개별 미결제 거래의 조건(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부담하게 될 모든 지급 및 인도 의무(옵션 권리도 포함함)까지 포함함)에 따라, 해당 개별 미결제 거래를 대체하거나 제공하기 위한 손실이나 이익을 결정하고(이러한 손실이나 이익의 결정은, 당시 시장가격 또는 대체 거래를 할 경우 지급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하여 성실하게 그리고 상거래상 적절한 방법에 따라 결정되며, 그리고 그러한 결정은 미결제 거래중 지급되어야 하나 미지급 상태인 거래의 금액도 고려함), (2) 앞에서 계산된 모든 손실과 이익은 미국 달러로 환산하여 상계처리하며, (3) 고객에게 상당한 정도로 상세히 기재된 계산근거를 적은 계산서를 제공하고 상계 처리된 금액("정산금액")이 지급될 날짜("정산일")를 통보한다. 다만, 정산일은 통지일보다도 빠를 수는 없다. 이 조항에 따라 산출된 정산금액은 순손실을 보유하고 있는 당사자에 의해 동일한 금액의 순이익을 보유하고있는 상대방에게 지급되지만, 적용 가능한 상계권(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9조를 포함함)을 우선 적용하기로 한다.
- ④ 거래 상황에 따라 거래처 또는 은행중 일방이 정산금액을 지급한 경우, 조기 해지된 거래 및 본 계약서로부터 발생하는 거래처 및 은행의 모든 의무는 해소된 것으로 간주되며, 본 계약서나 그러한 거래와 관련하여 추가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제 12 조 결제 등

- ① 거래처는 인도일에 개별 외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약정된 통화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 ② 개별 외환계약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거래처는 은행에게 거래처가 은행에 개설한 모든 계정에서 외환계약의 결제를 위하여 차기할 권한을 부여한다. 은행이 거래처의 계정에서 차기한 경우 지체없이 고객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 ③ 별지에 기재된 거래처의 직원 및 / 또는 임원과 은행에 등록된 거래처의 인감이 날인된 서면청구서 또는 영수증을

소지한 자는 누구든지 은행과의 외환계약의 결제와 관련하여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 등을 수령할 권한이 있으며 문서의 위조, 변조, 도용 등의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는 거래처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 13 조 결제에 관한 특약

이 약정에 따른 개별 외환계약의 결제에는 다음 각 항 중 항을 적용한다. (항삭제(인))

① **차액결제(Settlement Netting)방식** - 어느 개별 외환계약에 따라 거래처가 일정한 통화(“제1통화”)를 다른 통화(“제2통화”)와 교환으로 은행에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래(“거래A”)의 인도일이, 다른 개별외환계약에 따라 은행이 제1통화를 제2통화와 교환으로 거래처에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래(“거래B”)의 인도일과 일치하는 경우 위 개별 외환계약들에 의한 결제는 자동적으로 다음과 같이 차액결제의 방법으로 행하여지며 차액결제에 의하여 “거래 A” 및 “거래 B”에 따라 은행 및 거래처 각자의 인도의무는 인도일에 자동적으로 충족되고 이행된 것으로 본다.

- (1) 각각의 통화에 관하여 어느 한 당사자가 인도해야 할 금액이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 초과 금액만을 인도일에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 (2) 어느 한 당사자가 인도해야 할 금액이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금액과 대등한 경우에는 쌍방의 인도의무는 자동적으로 상계되어 소멸한다.

② **경개에 의한 정산(Netting by Novation) 방식** - 어느 개별 외환계약(“계약A”)에 따라 거래처 또는 은행이 일정한 통화(“제1통화”)를 다른 통화(“제2통화”)와 교환으로 상대방에게 인도해야 하는 인도일이, 같은 날 또는 그 후에 체결된 다른 개별 외환계약(“계약B”)에 따라 은행 또는 거래처가 제1통화를 제2통화 또는 기타 다른 통화(“제3통화”)와 교환으로 상대방에게 인도해야 하는 인도일과 일치하는 경우, 후에 체결된 계약B의 체결과 동시에 계약A와 계약B에 따른 채무는 자동적으로 소멸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되는 새로운 채무에 의하여 대체된 것으로 본다.

- (1) 제1통화에 관하여 (제2통화도 계약A, 계약B에 공통되는 경우 제2통화에 관하여도) 어느 한 당사자가 인도해야 할 금액이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 초과 금액만을 인도일에 인도해야한다.
- (2) 제1통화에 관하여 (제2통화도 계약A, 계약B에 공통되는 경우 제2통화에 관하여도) 어느 한 당사자가 인도해야 할 금액이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금액과 동일한 경우에는 새로운 채무는 발행하지 않는다.

다만, 본조에 따른 정산의 효과는 공통되는 통화에 한정되며, 계약A와 계약B에 따라 은행 또는 거래처가 서로 상이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은행 또는 거래처가 위 인도일에 각 상이한 통화를 인도해야 할 채무는 본조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거래처는 제3자가 제공한 보증, 담보 등은 본조에 의하여 발생하는 새로운 채무를 계속하여 보증하고 담보하는 것임을 확인한다.

제 14 조 비용 등의 부담

① 이 약정에 의한 모든 외환거래의 준비 또는 이행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수료, 비용(변호사 비용 등 법적 절차에 따른 비용을 포함한다). 손해배상금 등에 대하여는 은행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모두 거래처가 부담하

고 거래처는 은행이 계산근거를 명시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 ② 거래처는 인도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도할 금액에 대하여 인도일로부터 실제 이행일까지 은행의 원화여신(당해 통화가 원화인 경우) 또는 외화여신(당해 통화가 외국통화인 경우) 연체이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 ③ 제1항, 제2항의 수수료, 비용, 손해배상금, 자연배상금 등의 요율, 계산방법 및 환율과 그 적용방법은 이 약정서 또는 개별 외환계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은행이 정하며 은행은 성질상 고시하기 어려운 것을 제외하고 이를 고시하기로 한다. 다만, 거래처가 은행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한다.
- ④ 법원의 판결 또는 청산에 따른 배당 등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채무자”)가 약정된 통화(“계약통화”) 이외의 통화(“지급통화”)로 지급 또는 상환한 경우 채무자의 채무는 지급통화를 계약통화로 환산한 금액 상당액 한도내에서만 이행되어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할 환율은 그러한 지급 또는 상환일의 계약통화에 대한 은행의 대고객 전신환 매매율에 따른다. 계약통화로 환산한 금액 상당액이 원래 지급하여야 할 계약통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부족금을 지체없이 지급하기로 한다. 계약통화로 환산한 금액 상당액이 원래 지급하여야 할 계약통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초과금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한다. 위 부족금 또는 초과금 지급채무는 기존 외환계약에 따른 지급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로 본다.

제 15 조 불법 또는 불가항력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기존의 거래가 불법이 되거나, 불가항력 또는 은행의 통제 불가능한 요인(천재지변, 전쟁, 내란, 재해, 정부조치 및 이와 유사한 경우를 통칭함)으로 인해, 은행이 국내 지점을 통하여 기존의 거래 또는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지급 또는 인도가 불가능할 경우, 대한민국이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홍콩상하이은행 본점 또는 지점은 그러한 지급이나 인도를 대신할 의무가 없다.

제 16 조 양도금지 등

거래처는 은행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외환거래에 의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7 조 적용기간

이 약정의 적용기간은 정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이나 거래처는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력은 당사자 일방이 다른 당사자의 서면통지를 수령하는 때 발효한다. 이 경우 해지전에 이루어진 거래에는 이 약정이 계속 적용된다.

제 18 조 언어

이 약정은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되며 국문본과 영문본이 상치되는 경우에는 국문본이 우선한다.

제 19 조 준거법령 등

거래처와 은행은 이 약정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함이 없는 한 대한민국의 외국환 관련법규 및 은행의 외환거래

관련 규정에 따르기로 한다.

(별 지)

거래처의 거래담당자 및 수권전화번호

성 명	부 서 / 직 책	서명/서명관/인감	수권전화번호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